

개정 2003. 01. 12  
개정 2003. 12. 05  
개정 2004. 04. 01  
개정 2005. 02. 22  
개정 2005. 12. 20  
개정 2006. 03. 23  
개정 2010. 12. 30

단체품질인증

실내공기청정기 운영규정

(CA마크)





##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품질인증 운영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기청정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의 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실내공기청정기에 대한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대상)

본 인증시험은 KS C 9314에 의거 제품안전시험(전기안전형식승인 취득)을 통과한 제품으로 정격 풍량 2m<sup>3</sup>/min 이상 16m<sup>3</sup>/min 이하인 주로 일반가정, 사무실 등에 설치하여 미세먼지 제거 및 유해가스 제거를 하는 실내공기청정기(이하 "공기청정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① 국내 공기청정기 생산업체의 제품이나 수입하는 공기청정기로 한다.
- ② 제①항 이외에도 한국공기청정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을 할 수 있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기청정기** : 실내공기를 청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집진 및 유해가스 제거 등을 위하여 집진부와 송풍기가 내장된 것으로 크게 기계식, 전기식, 복합식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계식은 건식과 습식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기계식 공기청정기** : 여과재, 유해가스 제거재 또는 물분사 등의 기계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기 청정 장치를 말하며 집진 장치 또는 집진 및 유해가스 제거 장치와 송풍기 등으로 구성된 것.
3. **전기식 공기청정기** : 주로 고전압에 의한 정전기 현상을 이용하여 먼지 대전 또는 가스 분해 등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기청정 장치를 말하며 집진 장치 또는 집진 및 유해가스 제거 장치, 송풍기 등으로 구성된 것.
4. **복합식 공기청정기** : 기계식과 전기식의 기능을 복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기청정 장치를 말하며 집진 장치 또는 집진 및 유해가스 제거 장치, 송풍기 및 전원 장치 등으로 구성된 것.
5. **정격풍량** : 공기청정기를 정격주파수, 정격전압으로 운전하였을 때의 풍량. 단, 풍량 조절장치가 있는 것은 최대풍량을 말한다.
6. **표준 사용면적** : 공기청정기를 정격풍량으로 운전하였을 때의 적용면적을 말한다.

### 제4조 (인증시험 및 인증기준)

- ① 공기청정기의 인증시험은 구조와 일반 성능시험 및 특수 성능시험 등으로 구분한다.
-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별표 1]**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품질인증시험기준에 의한다.
- ③ 시험대상 공기청정기가 일반 공기청정기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어 제①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제조업자로 하여금 자가 기준과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7조의 인증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이를 공기청정기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5조 (인증시험방법)

공기청정기의 인증시험방법은 **[별표 2]** 실내공기청정기 규격에 따른다.

### 제6조 (수거검사)

협회는 단체품질인증 제품에 대하여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중 수거한 제품이 제4조의 기준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 (인증시험기관)

- ① 공기청정기의 품질인증시험은 협회가 한다.
- ② 협회는 제4조의 인증시험 항목 중 일부를 지정한 인증시험기관에 위탁 (이하“인증시험기관”이라 한다)하여 인증시험을 할 수 있다.
- ③ 협회는 지정된 인증시험기관을 등록 관리하여야하며, 인증시험기관의 시험능력을 주기적으로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 (인증시험신청)

- ① 인증시험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자 (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1**의 서식에 의한 인증시험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신청자는 인증시험 신청시 인증시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인증시험 신청의 접수는 수시로 하고 인증시험의 실시는 신청접수순으로 한다.

### 제9조 (인증시험수수료)

- ① 제8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 수수료는 협회 또는 인증시험기관의 수가규정에 따른다.
- ② 협회 또는 인증시험기관이 인증시험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이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 (인증시험기간)

- ① 인증시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구조와 일반성능은 시험신청일부터 30일 이내
  - 2. 특수성능은 시험신청일부터 40일 이내
- ② 제①항의 처리기간에서 법정공휴일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 제11조 (시험체의 선정 및 시험)

- ① 시험체의 선정은 협회에서 직접 현지 출장하여 무작위로 선정한 후 **별지 10**의 서식에 의한 인증시험 시험체 선정 증명서를 작성하고 사본1부를 교부한다.

- ② 시험체 선정은 2대 이상으로 한다.
- ③ 인증시험에 합격한 공기청정기의 인증시험은 매 3년마다 실시한다.
- ④ 시험체는 인증시험 완료일부터 1년간 보관 후 폐기하며, 동기간 후 신청자가 시험체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반환한다.

**제12조 (자료보완 등 요청)**

협회는 신청자에게 시험체의 내역 및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시험체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이를 추가로 요구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인증시험기간의 지연 등)**

협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인증시험 처리기간을 초과할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 및 일자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증시험에 대한 거부)**

- ① 협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신청자가 보완기한 종료일로부터 특별한 사유없이 30일이 경과하여도 보완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를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일건서류는 반송하고 인증시험 수수료는 인증시험기관에 귀속시킨다.
- ② 제8조 규정에 의한 시험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허위기재가 있는 경우 인증시험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협회는 제8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 신청을 하였더라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검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증시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위원회)**

- ① 공기청정기의 품질향상과 인증필증을 발급함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 협회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공기청정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학계 또는 연구기관 대표 2인 이상, 소비자단체 대표 1인 이상, 공공시험인증기관 대표 1인 이상의 인원과 협회의 이사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협회의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다.
- ④ 위원회에 의한 심의종합평가는 별지 2의 서식인 심의종합평가서에 의하며, 심의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 ① 협회는 인증시험이 완료된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종합평가를 거쳐 시험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사본 1부를 보관한다.
- ② 인증시험에 합격한 제품은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사본1부를 보관한다.

1. 공기청정기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는 **별지 3-1, 3-2**에 의하여 작성 교부한다.
2. 수거 검사 성적서는 **별지 3-1**에 의하여 작성 교부한다.
- ③ 시험성적서는 **별지 4**의 서식에 따라 시험성적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인증서는 **별지 5**의 서식에 따라 인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⑤ 신청자는 시험성적서, 인증서 재교부시 수수료를 8,000원/모델당 납부하여야 한다.

### 제17조 (인증필증)

- ① 제4조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에 합격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은 **별지 6**의 서식에 의한 인증필증을 발급한다. 인증필증 최소 발급수량은 500매로 한다.
- ② 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판매할 때는 협회에서 발급한 인증필증을 필히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 ③ 인증필증 발급매수는 매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한 수로 한다.
- ③ 인증필증은 당해 제품에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한다.
- ④ 인증필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 징수한다.
- ⑤ 인증필증 발급시에는 수령인 및 수령매수를 **별지 7** 서식의 인증필증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 ⑥ 인증필증 제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⑦ 제②항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법적문제는 업체에서 책임진다.

### 제18조 (인증시험원의 위촉)

인증시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회장이 위촉한다.

- ① 품질관리기사 또는 이공계 관련 기사
- ②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③ 협회장이 지정한 인증시험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제19조 (인증시험원의 임무)

- ① 인증시험원은 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인증시험원이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업무협조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회가 발행한 인증시험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상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0조 (사후관리)

- ① 협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품을 수거할 때는 **별지 8** 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수거된 제품의 사후관리 검사비용은 협회가 부담한다.
- ④ 사후관리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위반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협회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인증성능에 부적합한 경우

2. 인증제품과 비교하여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3. 제23조의 표시사항을 허위 및 과대로 표시한 경우
4. 인증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제④항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인증필증의 발급을 중지한다.
- ⑥ 제⑤항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⑦ 인증필증 부착제품이 제조업체의 잘못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가 관리 감독한다.
- ⑧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21조 (보고)

- ① 신청자는 신고한 인증제품 중 생산 또는 수입이 중지되어 판매가 중단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가 중단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11** 서식에 따라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단종된 제품의 인증서 원본은 협회에 제출한다.
- ② 협회는 공기청정기 인증시험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9**의 서식에 의거 해당 관련 부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조 (문서의 보관)

- ① 인증시험규정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시험신청서 : 3년
  2.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 3년
  3.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발급대장 : 5년
  4. 인증필증 교부대장 : 5년
  5. 심의종합평가서 : 5년
- ② 제①항 각호 이외의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23조 (표시사항)

- ① 공기청정기의 제품, 포장 등에는 [**별표 3**]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인식하기 쉽도록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공공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표시는 금지한다.

### 제24조 (광고 및 홍보)

- ① 협회나 업체는 CA마크를 제품 및 포장, 팸플릿, 광고매체,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 등에 광고할 수 있다.
- ② 업체가 인증서의 내용을 본 규정이 정한 목적 및 제품의 표시사항 외의 광고·선전 및 판촉활동에 이용하고자 할 때는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5조 (소비자보호)

- ① 인증 받은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협회는 당해 제조업체(판매)와 협의하여 제품의 교환 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①항의 경우 협회는 당해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협회 내에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6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세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협회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시험에 대한 사항

- ① 일반시험 : 전월말일까지 협회에 CA마크 인증시험신청서 접수를 한 제품에 한해 당월 첫째주까지 시험체 선정을 매월 1일부터 7일(공휴일제외)까지 완료한 후 인증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의뢰한다. 중간결과와 업체통보 절차는 없으며, 시험결과는 협회에 통보하여 당월 심의위에 상정한다.
- ② 급행시험 : 시험신청과 제품인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7일 이후(공휴일 제외)에 시험을 완료하고 결과를 협회에 통보한다. 급행시험 비용은 일반시험비용의 150%로 한다.

### [부칙 2] 재시험

인증시험결과 제품성능이 규격기준에 부적합 판정되어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에 한해 한달 이내에 제품성능을 보완하여 인증시험을 재신청할 경우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비용은 일반시험비의 50%로 한다.

### [부칙 3] 파생모델

#### ① 파생모델 정의 및 범위

1. 정의 : CA 인증제품과 구조, 부품, 모양 및 크기 똑같으나 색깔 및 판매원(처)이 다른 경우
2. 범위
  - ㉠. 파생모델 인증 : 색깔 및 제품(모델)명이 다른 경우
  - ㉡. 파생모델 시험 : 흡입·토출, 그릴부분에 변화가 있을 경우
  - ㉢. 파생모델 불인증 : ㉠항과 ㉡항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

② 파생모델 심의절차

1. 파생모델에 대한 확인은 심의위원 1인 또는 협회인증담당자가 실물에 대한 실사 확인 및 평가에 대한 보고서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실사 확인·평가지 **별지 12**의 서식에 의한 파생모델 체크리스트 확인서를 작성하고 사본 1부를 교부한다.

(파생모델 확인 실사출장비 : 20만원/1회,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실사출장은 별도 교통비 부과)

2. 제①항에서 파생모델이라고 신청한 제품이 외관 및 구조(흡입토출구, 그릴부분 변화)에서 차이가 있어, 파생모델 시험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될 경우, 정격풍량과 소음을 기본으로 하여 미세 먼지 제거율 등의 추가시험을 인증시험기관에서 수행하며, 시험비용은 50만원으로 한다.

(오차범위 : 풍량-10%, 소음+5%, 그 외 항목은 사후관리 오차범위 적용)

3. 파생모델 시험에서 최종적으로 불합격된 제품을 보완하여 시험할 경우에는 재시험을 한다.

**[부칙 4] 위원회 심의 일정**

인증시험 제품은 매월 30일까지 접수된 제품에 대하여 시험한 후 익월 셋째주 목요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단, 심의일정은 현 위원회의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부칙 5] 인증필증료 납부**

① 제17조 제⑤항에 의한 인증필증료는 해당업체의 CA인증제품에 한해 매1년 CA인증필증을 5만매 이하를 발급하여 부착할 경우 700원/매 적용하며, 5만대이상부터 발급된 CA인증필증은 인증필증 제작비용료만 납부한다.

② 협회는 매년 업체별 CA마크 인증필증 발급량을 공개한다.

**[부칙 6] 사후관리 성능검사결과 오차범위 및 조치**

① 운영규정 제20조에 의거 CA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검사시 CA인증 제품성능 검사결과가 아래와 같이 오차범위이내일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시험항목	단위	오차범위	비고
정격풍량	CMM	-10%	단, 사후관리 제품성능 검사결과가 오차범위이내일 경우라도 <b>CA인증 성능기준에 미달될 때는 제외</b> 한다.
미세먼지 제거율	%		
유해가스 제거율	%		
표준 사용면적	m <sup>2</sup>	+10%	
오존발생농도	ppm	+5%	
소음	dB		

② 운영규정 제20조에 의한 사후관리 후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보완내용을 협회에 보고하고, 협회는 보완내용을 검토한 후 성능부분에 확인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이때 소요되는 시험비 및 제품구입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부칙 7] 인증마크 사용에 관한 약정**

- ① 협회는 인증업체와 별지 13 서식에 의거하여 인증마크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 ②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한다.

[별표 1]

##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품질인증시험 기준

### 1. 구 조

구조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한다.

### 2. 일반성능(의무항목)

다음 항목에 대한 성능이 있어야 한다.

- 1) 정격풍량
- 2) 미세먼지 제거율
- 3) 분진청정화능력
- 4) 오존발생농도
- 5) 유해가스 제거율
- 6) 소음

### 3. 특수성능

- 1) 미세먼지 제거용량
- 2) 유해가스 제거용량

[별표 3]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제품의 특성에 관련된 주요사항 (제품 및 포장에 부착)

- 품명 또는 제품(모델)명
- 제조(수입)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판매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A/S지점의 위치 및 전화번호
- 제조년월일 및 보증기간
- 청정화 부품 특성
- 청정화 부품 교체/세정 주기  
“가급적 매 6개월마다 교체 또는 세정하여야 표시된 공기청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공기청정성능  
정격풍량, 미세먼지제거율, 분진청정화능력, 유해가스제거율, 소음, 오존발생농도, 표준사용면적
- 특수 공기청정성능  
일반 공기청정성능 이외에 인증시험에 합격된 항목

□ 제품의 사용설명에 관한 사항(제품, 포장, 카다로그, 사용설명서에 표시)

- 청정화 부품 교체시기, A/S에 관한 사항(전화번호)
- 사용설명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습기가 많은 곳을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매월 집진/탈취부를 점검한 후 사용하기 바랍니다.

□ 소비자 정보사항(제품 및 카다로그, 사용설명서에 표시)

- 재질별 청정화 성능에 관한 사항

재 질	청 정 화 능 력
집진부	입자상 물질(먼지, 미스트 등)
활성탄	유해화학물질(냄새, 휘발성물질 등)
플라즈마반응부	유해화학물질(냄새, 휘발성물질 등), 세균
자외선등	세균

※ 공기청정기별 성능은 인증필증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우리공기청정기는 전기플라즈마반응부로 되어있어 유기화합물질, 냄새, 세균 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성능 표시사항 예시》

제품/모델명	새나라 공기청정기 (KA-4156)		
제조년월일	2003. 03. 26		
표준사용면적	5 m <sup>2</sup>		
공기청정기 성능표시	정격풍량	미세먼지제거율	분진청정화능력
	소음	유해가스제거율	오존발생농도
청정화부 구성	정전필터 + 활성탄		
보증기간	판매일로부터 1년		
A/S센터 TEL			
제조원	업체명		
	연락처		
	주 소		
판매원 (제조원과 다를 경우)	업체명		
	연락처		
	주 소		

– 기타사항

- 필터 교체 주기 : 6개월

“가급적 매 6개월마다 교체하여야 표시된 공기청정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습기가 많은 곳을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월 집진/탈취부를 점검한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표시사항 중 다른 표시사항과 중복된 내용은 삭제 할 수 있다.

[별지 1]

접수번호 :

 <b>CA마크 인증시험 신청서</b> (시험, 갱신, 파생)			처리기간	
			30일	
브랜드명		모델/규격명		
신청업체명		대표전화번호		
대표이사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소재지		설립년월일		
제조회사명		제조년월일		
담당자	성명	핸드폰번호		
	부서/직위	TEL		
	E-mail	FAX		
청정화 방식		구 분	국내제조, 수입	
기타 특이사항		리모콘여부	유 / 무	
시험후 처리		회수, 폐기		시험체선정요청일
시험 항목	정격풍량	CMM		정격적용면적 m <sup>2</sup>
	성능 일반	정격풍량, 미세먼지 제거율, 분진청정화능력, 오존발생농도, 유해가스 제거율, 소음, 표준사용면적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품질인증 운영규정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시험을 신청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주 소 : (    -    )				
신청업체명 : 대표이사 : (인)				
<b>한국공기청정협회장 귀하</b>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시험의뢰 제품에 대한 사양·설명서 (카다로그) 1부			[접수비] 110,000 (VAT포함)	

※ 신청서 접수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함께 제출

※업체주소는 빌딩명까지 자세히 기재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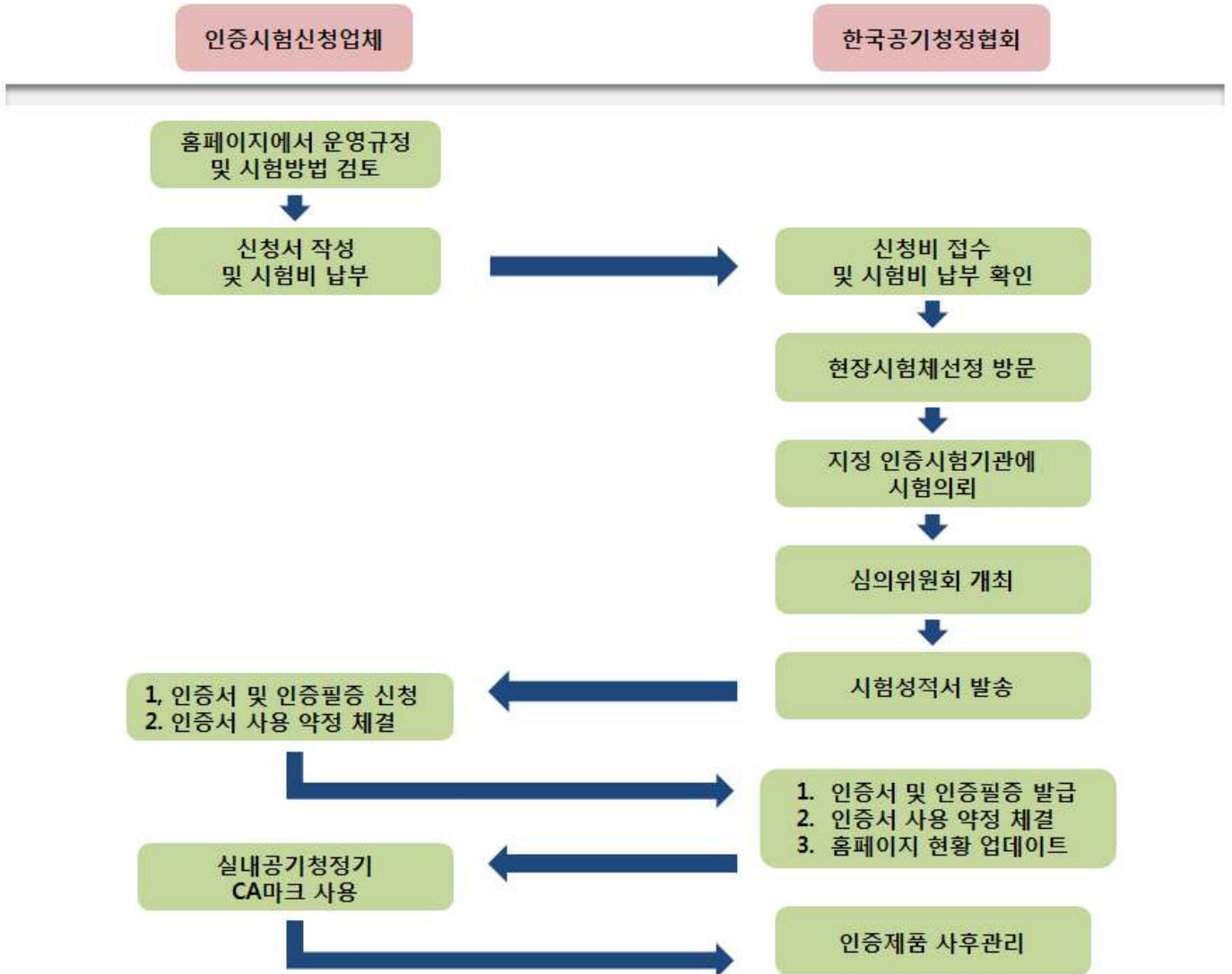
### 일 반 사 항 정 보

업체유형 (중복표기)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판매 <input type="checkbox"/> 제조/판매 <input type="checkbox"/> 가공판매 <input type="checkbox"/> 가공제조 <input type="checkbox"/> 수입판매 <input type="checkbox"/> OEM판매 <input type="checkbox"/> 기타						
업체 주요품목				기업연구소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회사인원	(명)		
연간 총매출액 (단위 : 천만원)	전 년 도				“공기청정기” 연간생산량(생산예정량)	전 년 도	
	금년예상				(단위 : 대)	금년예상	
“공기청정기” 수출입현황 (국가별 기재)	수 입			수 출			(예시)
	국가명	수량(대)	금액(천만원)	국가명	수량(대)	금액(천만원)	
							중국
							100
							10,000

### 관 련 담 당 자 정 보

<b>관 련 담 당 자 정 보</b>			
● 인증 담당자(회의참석 및 사후관리)			
담당자		부서명 / 직책	/
전화번호		전자메일	
● 판매 관련 담당자			
담당자		부서명 / 직책	/
전화번호		전자메일	
● 홍보 및 마케팅 담당자			
담당자		부서명 / 직책	/
전화번호		전자메일	
● 전자세금계산서 담당자			
담당자		부서명 / 직책	/
전화번호		전자메일	

# 인증 절차



[별지 2]

## 심 의 종 합 평 가 서

1. 심의내용 : 구조, 성능

2. 심의결과

NO	업 체 명	모델/규격	업체 내용	심의결과		의 견
				가	부	
1						
2						
3						
4						
5						
6						
7						

3. 특이사항

- 파생모델 심의	내용	심의결과		의 견
		인정	불인정	

20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한국공기청정협회장

[별지 3-1]

### 실내공기청정기 시험성적서

신청회사명 : 제품명(모델) :  
 대 표 자 : 청정화 방식 :  
 주 소 :  
 시험기관 :

항 목		단 위	기 준	성 능	비 고	시험 조건	
						온도(℃)	상대습도(%)
성능	일반	정격풍량	CMM	-	최대운전	-	-
		미세먼지 제거율	%	80		0.3 $\mu$ m	
		분진청정화능력	m <sup>3</sup> /min	-		0.3 $\mu$ m	
		오존발생농도	ppm	0.03			
		유해가스 제거율	%	60	최대운전		
		소음	dB	45, 50, 55	최대운전	-	-
	특수	미세먼지 유지용량	mg/m <sup>3</sup>	-			
		유해가스 제거용량	ppm/min	-			
구 조							
적용면적		평					
판 정							

위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합니다.

200    년    월    일

한국공기청정협회장

이 성적서는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홍보, 선전, 광고 및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품질인증용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2-1 강성빌딩 7층, 전화 : (02)553-4156, www.kaca.or.kr)

[별지 3-2]

### 실내공기청정기 인증서

인증 번호 :

신청회사명 :

제품명(모델) :

대표자 :

청정화 방식 :

주소 :

시험기간 :

항 목		단 위	기 준	성 능	비 고	시험조건	
						온도(℃)	상대습도(%)
성능	일반	정격풍량	CMM	-	최대운전	-	-
		미세먼지 제거율	%	80	0.3 $\mu$ m		
		분진청정화능력	m <sup>3</sup> /min	-	0.3 $\mu$ m		
		오존발생농도	ppm	0.03			
		유해가스 제거율	%	60			
		소음	dB	45, 50, 55	최대운전	-	-
	특수	미세먼지 제거용량	g	-			
		유해가스 제거용량	g	-			
구 조		적 합					
표준 사용면적		m <sup>2</sup>					
판 정		합 격					
인증 유효기간		~					

위 제품은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품질인증 규정에 의해 시험한 결과  
위와 같은 성능으로 평가되었음을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

한 국 공 기 청 정 협 회 장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2-1 강성빌딩 7층, 전화 : (02)553-4156, www.kaca.or.kr)





# 인 증 필 증



A : 검 정 색

B : 적 색

C : 연 두 색

D : 청 색

E : 투 명 색

No : CA00 - 00 - 000000

업체고유번호    년도    승인번호

## 인증필증이란?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실내공기청정기 품질인증규정에 의하여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인증시험에 합격한 우수제품에 한하여 시행하는 품질인증제도입니다.

## 인증필증 제작

인증필증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인증필증크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협회에 사전 승인후 시행한다.

## 인증필증 크기

소(40X56mm) , 대(50X70mm)









[별지 11]



## CA마크 제품 단종 신고서

신 고 일 :

업 체 명 :

담당부서 :

담 당 자 :

(TEL)

(FAX)

(E-mail)

수 신 : 한국공기청정협회장

참 조 :

제 목 : CA마크 제품 단종 신고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품질인증 운영규정」에 의거 우리 회사의 CA마크 제품 중 단종제품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CA마크 제품 단종 신고

NO	인증제품명	과생모델명	생산및수입 중지일	판매 중단일	사 유
1					
2					
3					
4					
5					
6					
7					
8					
9					
10					
소계					

1. '사유'란에는 제21조 제①항에 의거 생산 또는 수입중지 등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2. 년·월·일 순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별지 13]

CA 인증마크 사용에 관한 약정서

(사)한국공기청정협회(이하 “甲” 이라 한다)는 (이하 “乙” 이라 한다)와 CA인증마크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 다 음 -

제1조(인증품목)

회사명	모델명	적용면적	인증유효기간
		m <sup>2</sup>	~

제2조(서약기간)

이 서약의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인증마크의 표시 및 인증필증)

- ① “인증마크” 는 “甲” 이 소유하는 인증마크 표장으로서 “乙” 은 “甲” 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에 대하여 인증제품, 포장박스, 팜플렛 등에 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② CA인증필증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 신청하여 필히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 ③ 기타 인증마크 표시에 대한 사항은 “甲” 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제재조치)

- ① “甲” 은 “乙” 이 다음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조치 및 재검사 시험을 1개월이내 실시한다.
  - (1) 과대광고(대리점 및 위탁판매등 유통업체 포함)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경쟁업체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인증마크 표시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4) 인증제품에 CA인증필증이 부착하지 않고 시중에 판매할 경우
  - (5) 사후관리시의 시정사항을 불이행 한 경우
  - (6) 소비자의 정당한 A/S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7) 사후관리결과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⑤항의 기준 참조)
- ② “甲” 은 “乙” 이 다음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인증마크 표시를 정지시킨다.
  - (1) 사후관리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⑤항의 기준 참조)
  - (2) 제①항에 의한 경고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 ③ “甲” 은 “乙” 이 다음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인증마크 인증을 취소한다.
  - (1) 인증마크표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 (2) 허위광고를 한 경우



## 인증시험 수수료 산출내역 (VAT별도)

(가) 접수비 : 10만원

(나) 출장비 : 5만원 (서울지역)

10만원 (경기, 인천)

15만원 (충청도)

20만원 (전라도, 경상도)

30만원 X 인원 X 일수 + 실비 (제주도, 해외, 기타 도서)

※ 신청 품목별 출장 현장이 틀릴 경우 별도 청구 됩니다.

(다) 시험료 (시험기관) : 2,200,000원

1) 풍량시험 : 10만원

2) 미세먼지 제거율 : 40만원

※ 집진성능 덕트 구성은 시험대상의 크기 및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은 별도 추가

3) 정화능력 : 60만원

4) 오존발생량 : 10만원

5) 유해가스 제거율 : 60만원

6) 소음 : 10만원

7) 기타 : 10만원

\* Total : 2,000,000원

※ 미세먼지 제거용량 성능시험 및 기타 특수시험은 업체가 요구시 시험료는 별도 협의 후 결정함.

※ 인증시험시 출장이 필요할 경우 시험의뢰업체에서 실비로 비용을 별도 부담한다.

(라) 인증수수료 <부가세 별도>

구 분	금 액	비 고
접수비	100,000원	
인증심의료	300,000원	
시험비	2,000,000원 (기본)	시험시 추가로 발생하는 시험료는 인증시험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여 비	별 도	인증시험 수수료 산출내역 나)항에 따른다.
인증필증료	700원/1매당	